[수정] 「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」 소상공인 모집 안내

각 대학 별 모집일자 반영에 따라 접수 마감일이 수정되었습니다.

지역 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온·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「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」 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2026년 6월 15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

1. 사업안내

□ 사업목적

○ 온라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

□ 지원대상 및 규모

○ 온라인시장 진출 또는 활성화를 희망하는 **소상공인*** **2,550명**

*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[참고2] 소상공인 확인 방법 참조)

□ 지원내용

○ **(교육지원)** 전국 디지털 특성화대학 15개교에서 온라인시장 진출 관련 **30시간 이상의 온·오프라인 교육 실시**

- **(온라인)*** 국내·외 플랫폼 활용 방법, 고객 데이터 관리 및 보호, 소상공인 성공 노하우 등 **49개 콘텐츠 중 10시간 이상 자율 수강**

 * 소상공인지식배움터(edu.sbiz.or.kr) 내 온라인판로개척(e-커머스)

- **(오프라인)*** 국내·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AI 도구활용 방법,

물류기초 온라인 마케팅 등 **20시간 이상의 실습 중심 교육 수강**

* 대학별 상세 커리큘럼은 '[붙임] 대학별 커리큘럼 현황' 참조

○ **(멘 토 링)** 온라인 진출 관련 상담 및 노하우 제공을 위한 전문가 또는 소상공인을 활용한 실습 멘토링 지원

< 2026년 디지털 특성화대학 리스트 >

구분	권역	대학명	행정구	문의처	대학 홈페이지	접수마감
1	서울·강원권	가톨릭대학교	서울 서초구	02-2164-4730	catholic.ac.kr/ko/index.do	2026.11.11.
2		성신여자대학교	서울 성북구	02-920-7559	sungshin.ac.kr	2026.11.09.
3		숭실대학교	서울 동작구	1566-0762	ssudt.co.kr	2026.11.20.
4	경기·인천권	단국대학교	경기 용인시	031-8005-2458	접수마감	
5		청운대학교	인천 미추홀구	010-3796-1126	iniacf.chungwoon.ac.kr	2026.11.21.
6		한신대학교	경기 오산시	031-379-0248~9	hs.ac.kr	2026.11.15.
7	대전·충청권	건양사이버대학교	대전 서구	042-722-0077	kycu-onsaesang.co.kr	2026.11.20.
8		남서울대학교	충남 천안시	041-580-3272	iacf.nsu.ac.kr	2026.11.11.
9		청주대학교	충북 청주시	043-299-7596	접수마감	
10	부산·울산·경상권	경남대학교	경남 창원시	055-249-6338 055-249-2909	접수마감	
11		대구한의대학교	경북 경산시	053-819-7822	접수마감	
12		동명대학교	부산 남구	051-629-3439	접수마감	
13	광주·제주·호남권	광주대학교	광주 남구	062-670-2243	gwangju.ac.kr	2026.11.18.
14		국립목포대학교	전남 무안군	061-450-2657	dtsc.kr	2026.11.20.
15		전주대학교	전북 전주시	063-220-2843 063-220-3196	jjstartup.jj.ac.kr	2026.11.20.

※ 대학별로 교육 커리큘럼은 상이하며, 상세내용은 대학에 문의 또는 붙임자료 참조

□ 교육혜택

○ 디지털 특성화대학 수료생은 공단「온라인 판로지원사업」신청 시, 가점제공 및 우선선정 혜택 부여

○ ③ ~ ⑫ 사업은 **차년도에 신청 가능**

○ 교육 출석률이 80% 미만일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교육혜택 미제공

<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>

사업명	내 용
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	- 해외 온라인플랫폼 미입점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첫 진출 및 신규 판로 확대를 통한 온라인 수출 첫 걸음 지원
② 소상공인 플랫폼 협업교육	-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장 실습 중심의 플랫폼 활용 교육 지원
③ 상품 개선	- (포장) 박스·스티커·설명서 등 포장 관련 디자인 제작 - (브랜드) 로고·캐릭터·배너 디자인 등 제작
④ 상세페이지 제작	- 소상공인 제품의 특장점을 반영한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
⑤ 콘텐츠 제작	- 제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한 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
⑥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- (온라인쇼핑몰) 단독딜 및 전용 기획전 노출 지원 - (로컬상품관) 지역몰 내 상품 판매 및 마케팅 지원
⑦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-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상품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, 판매 전 과정 지원
⑧ SNS 마케팅	- 소상공인 상품 컨설팅, SNS 광고 및 결과 레포트 제공
⑨ 온라인 홍보	- 검색 포탈을 활용한 검색 광고 등 상품 홍보 지원
⑩ 물류 서비스	- 상품 보관, 포장, 배송 등 관련 물류 서비스 제공
⑪ 유통플랫폼 MD상담회	- 소상공인과 유통사 MD 간 1:1 상담·만남의 장 마련, 안정적인 판로 및 대형유통사 납품 기회 확대 지원
⑫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	- 홈쇼핑 입점을 통한 방송 판매 지원 및 방송 송출, QA 심의 등 상담회(컨설팅) 지원

2. 신청방법 및 선정

□ **신청기간 :** 대학별 상이하며 상세 일정은 대학에 문의

□ **신청방법 :**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* 접수 전 대학 문의처를 활용해 교육 일정, 내용 등 미리 확인 필요

□ **제출서류 :**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소상공인 확인서**(유효기간 내)**	마이데이터 동의 시 생략 가능
2	사업자등록증명원**(1개월 이내 발급본)**	

□ **선정절차 :** 디지털 역량진단 → 선정평가*(대학) → 결과통보(대학)

* 소상공인 디지털활용 역량수준 및 대학별 커리큘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

3. 기타 사항

□ **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**

○ 신청 전, 대학에 먼저 문의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당해 수강 완료한 교육과정(분반)은 재수강 불가

* 타 교육과정(분반)은 수료 가능

○ 본 교육은 대학에서 **오프라인**으로 진행되는 교육으로 교육일정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대학에 문의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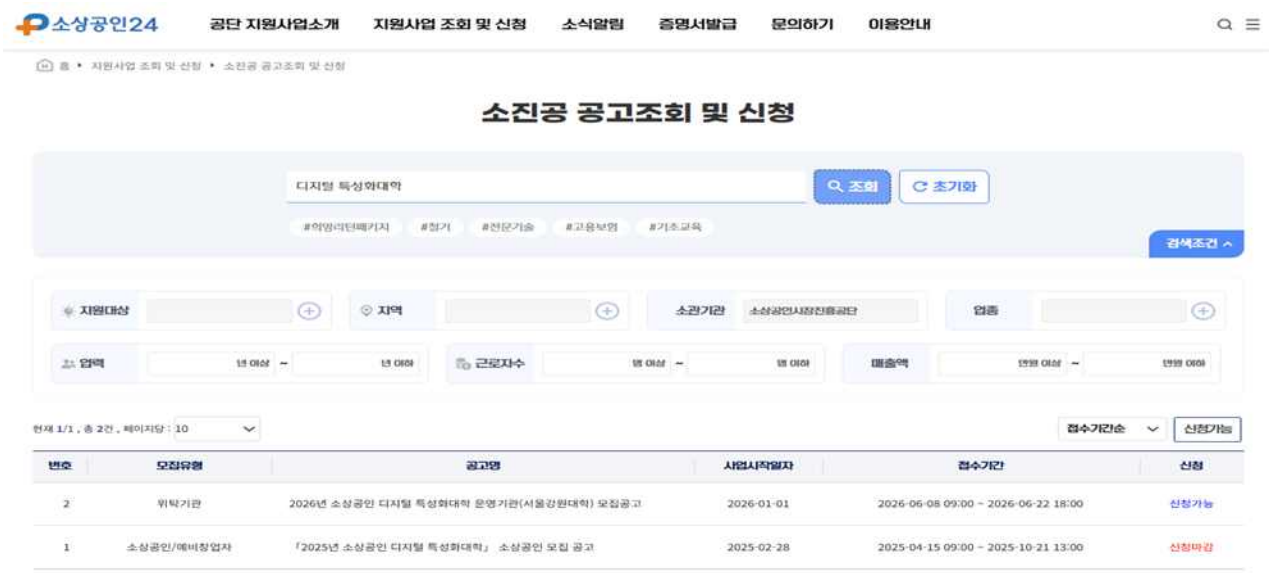
○ 대학 교육 일정 마감 및 교육생 한도 초과 등 요소로 **조기종료** 될 수 있습니다.

○ 본 교육은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**대리 신청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**

○ 공동대표자의 경우 **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**합니다.

참고 1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

[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]



<사전준비>

① **소상공인 24 회원가입**(소상공인 마당 아이디/비번 활용 가능)

※ 주 대표자 명의 가입(공동대표 신청 불가) 후 본인 인증 필수

② **기관·업체 정보등록**

- 마이페이지 > 기관/업체정보 > 신규업체 등록/기존업체 등록 택1
-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/휴대전화번호/업종 등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
<신청절차>

① 지원사업신청 > ② 공고조회 > ③ 신청공고 클릭(공고명) > ④ 지원신청

[참고. (마이데이터 비동의 시)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]

◦ **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**

- 사업신청일 기준 **유효기간 내** 확인서 제출
- **소기업·소상공인**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**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** 접속 (URL : https://sminfo.mss.go.kr/)

* 발급문의처

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
②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02)3215-2674



참고 2 소상공인 확인 방법

< 1 상시근로자수(5/10인 미만) + 2 소기업 매출조건 충족 ☞ 소상공인 >

(유의) 소상공인 사전 확인용 참고 자료로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여부와는 무관함

1 **(상시근로자수)**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❶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업 종	기 준
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	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
그 밖의 업종	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

*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**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**
 참고 : <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>
 <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 및 제7조>

❷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

<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>

① 임원* 및 '소득세법 시행령'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
 * 법인의 대표이사, 등기임원 및 감사(사외이사 제외), 개인기업 대표

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
 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*의 연구전담요원
 * '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'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
 **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.오프라인 발행)와 연구개발인력현황(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) 제출받아 확인

④ 단시간근로자*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
 * '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
 ** 근로계약서 등 확인

SEMAS/온라인판로팀/이혜민/2026-11-03 15:46:54

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
2. 1차 금속 제조업	C24	
3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4. 음료 제조업	C11	
5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6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7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8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9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운수 및 창고업	H	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
19. 금융 및 보험업	K	
20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21. 광업	B	
22. 담배 제조업	C12	
23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4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
SEMAS/온라인판로팀/이혜민/2026-11-03 15:46:54

25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6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7.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8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9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C31	
30. 기타 제품 제조업	C33	
31. 건설업	F	
32. 도매 및 소매업	G	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7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(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)	S(S94 제외)	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「통계법」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SEMAS/온라인판로팀/이혜민/2026-11-03 15:46:54

참고 3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

표준산업분류	업 종
	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**"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"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**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**"관광진흥법"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**
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**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"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**
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.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>

예외규정에 따라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,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

단,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0조(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)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必

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(부가세 포함) 합계액(가격합계액)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
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. 단,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

③ 상기 ①,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·지급 명세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 불가

SEMAS/온라인판로팀/이혜민/2026-11-03 15:46:54

안내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

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

▪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부당개입 주요유형	
① **부당 보험영업 행위**	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
② **대출 심사 허위 대응**	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③ **허위 대출 약속**	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
④ **정부기관 등 사칭**	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
⑤ **부정청탁**	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
⑥ **계약불이행**	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▪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▪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<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>
- (이메일) online@semas.or.kr
- (콜센터) 1533-0100
- (현장접수)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